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67

발의연월일: 2021. 2. 5.

발 의 자:이헌승·한준호·박홍근

홍석준 • 이종배 • 임이자

이양수・송석준・박수영

허은아 · 최형두 · 김성원

권명호 · 하태경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동물보호센터의 장 또는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처리하되,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 도적인 처리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46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4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
	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